

중형고용센터 등 72개소를 설치하여, 보다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고용서비스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증가하는 고용서비스에 선제적으로 대응
- 시설공사, 참여기관 입주 협의 등을 거쳐 10월부터 개소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98개소 등 현재의 고용서비스 점점 101개소에 더해,
- 금년 중 전국 72개 시·군에 중형고용센터 및 출장소가 설치·운영되어 고용센터 이용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고용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 ◇ **중형고용센터(32개소)**: 지역의 고용·복지 서비스기관이 참여하는 협업조직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보다 규모가 작고, 국민취업지원제도(도입 전까지는 취업성공패키지), 취업 및 구인기업 지원 등 고용센터 업무의 일부만 수행
- ◇ **출장소(40개소)**: 고용센터 직원이 주 2~3회 지자체 등을 방문, 고용서비스 종합 안내·상담 및 지역 내 고용서비스기관과 연계한 취업알선 수행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6.25.(목)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고용서비스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중형고용센터 등 신규설치 및 운영방안'을 발표하였다.

*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소속 전문위원회로 관계부처·노사대표·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고용서비스 제도·인프라 개선안 등을 심의

- 이번 공공 고용서비스 점점 확대 계획은 내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증가하게 될 고용서비스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 고용센터 접근성 및 일자리 해결을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이다.

- 중형고용센터 설치 예정지는 관할 고용·복지 서비스 수요*, 인구 및 고용센터까지의 이동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충청남도 당진시, 경상북도 상주시 등 32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 관내 사업체수, 구인인원 및 구직건수, 차상위수급자수 등

** 대중교통으로 시·군청에서 센터까지 이동거리 1시간 이상

- 중형고용센터에서는 고용센터·지자체·새일센터 소속 5명 내외의 직원이 국민취업지원제도(도입 전까지는 취업성공패키지)를 중심으로 취업 및 구인기업 지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향후 시설 공사, 참여기관 입주 협의 등을 거쳐 준비된 중형고용센터 순으로 10월부터 개소하여 연내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 출장소는 이동거리가 1시간 이상이지만 행정 및 일반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 고용센터 직원이 사전 협의된 장소·일정에 따라 매주 2~3회 정례적으로 자치단체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붙임1 중형고용센터 등 설치 예정지역 및 운영안 참조

-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사태로 특히 고용보험의 틀 밖에 있는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및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하면서
-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 등 고용안전망 확충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 일자리와 일거리를 찾는 모든 구직자들이 고용안전망 확대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더욱 촘촘하게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금연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문세원 사무관(☎044-202-733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중형고용센터 (32개소)

중부권역(8)	가평군, 강화군, 군포시, 동해시, 양평군, 여주시, 포천시, 홍천군
충청권역(8)	금산군,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진천군, 태안군, 홍성군
경북권역(4)	영천시, 상주시, 의성군, 예천군
경남권역(4)	함안군, 창녕군, 사천시, 고성군
전라권역(8)	고창군, 고흥군, 나주시, 무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화순군

- 고용센터 2명, 지자체 2명(일자리센터, 복지지원팀), 새일센터 1명 등 총 5명 내외로 운영
 - * 관할구역 행정수요, 센터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 인력배치 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도입 이전까지 취성패)를 중심으로 취업 및 구인기업 지원 업무 수행
 - (고용센터) 취업취약계층 대상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소득지원,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참여기관별 서비스 배분·의뢰, 구인업체 대상 채용서비스 제공
 - * 센터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급자격, 실업인정 업무도 수행 가능
 - (지자체·새일센터) 대상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농촌일자리 등 지역일자리 상담·연계,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생계·의료·돌봄서비스 제공
- ※ 코로나19 현안 대응으로 인한 고용센터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감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증원인력 배치 전까지 일부 센터는 비상근제로 운영할 수 있음

이동출장소 (40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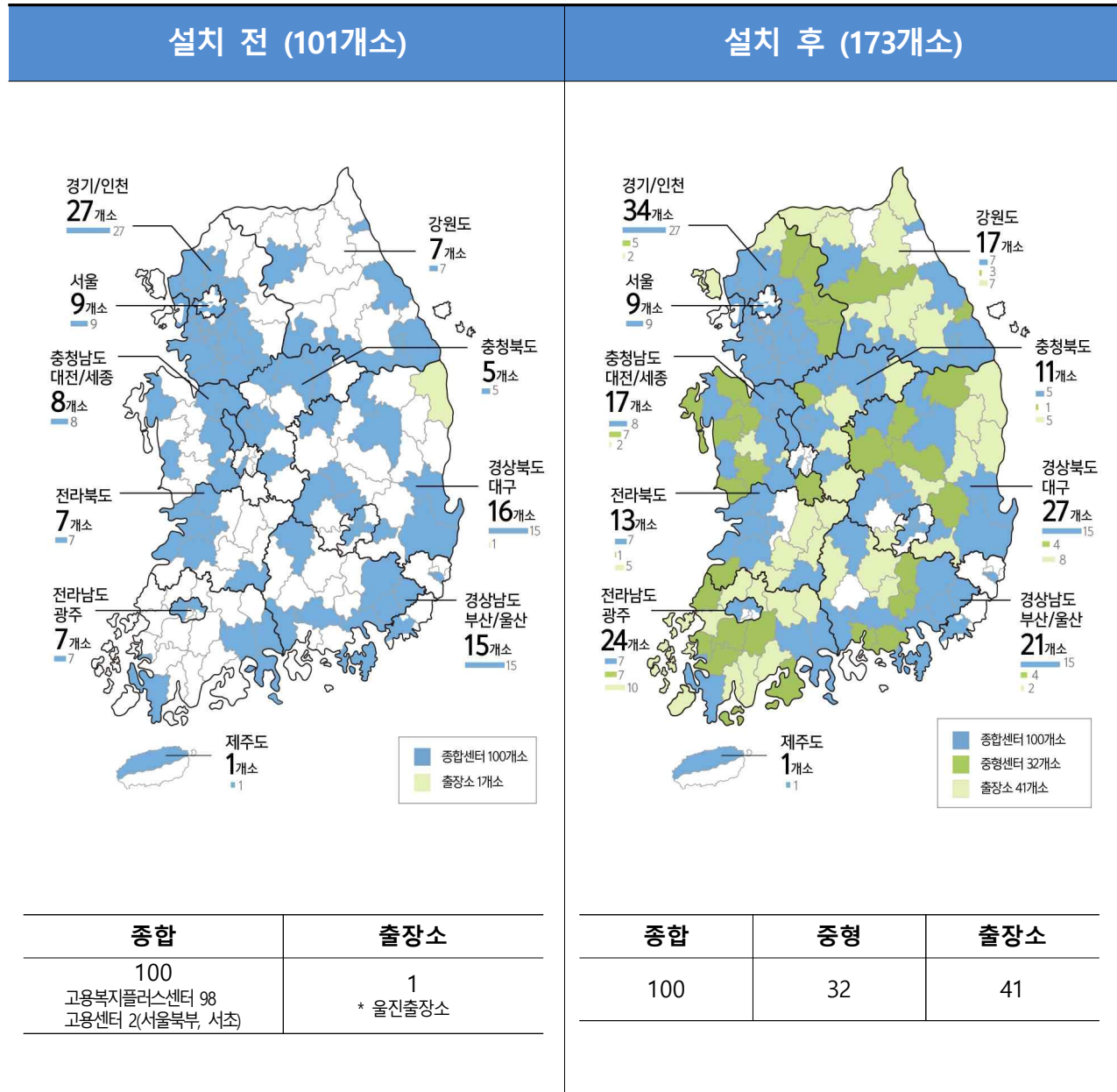
중부권역(8)	고성군, 연천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화천군, 횡성군
충청권역(7)	계룡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증평군, 청양군
경북권역(7)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영덕군, 영양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권역(3)	의령군, 함양군, 합천군
전라권역(15)	강진군, 구례군, 곡성군, 담양군, 무주군, 보성군, 순창군, 신안군, 임실군, 장성군, 장수군, 장흥군, 진도군, 진안군, 함평군

- 고용센터 직원이 사전에 협의된 장소·일정에 따라 매주 2~3회 정례적으로 자치단체 등 방문
- 고용서비스 종합 안내 및 상담, 취업알선 등 제공

붙임2

중형고용센터 등 설치 이후 모습

- 현 101개 고용센터에서 중형고용센터 32개소, 출장소 40개소를 신설하여 총 173개소로 확대



*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16.7.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 고용부에서 매년 기본 운영비 지원

붙임3

고용센터 개요

□ 목 적

- 국가고용정책의 핵심 전달체계로서 취업상담·알선, 실업급여,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 기업지원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 수행

□ 법적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11조(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고용서비스 제공 시설의 설치·운영)
-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고용노동부 훈령)

□ 고용센터 설치 현황(101개소)

중부권역(43)	서울, 서초, 서울강남,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강서, 서울북부, 서울관악, 인천, 인천북부, 인천서부, 부천, 김포, 의정부,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고양, 파주, 수원, 용인, 화성, 성남, 경기광주, 이천, 하남, 안양, 광명, 의왕, 안산, 시흥, 평택, 안성, 오산, 춘천, 강릉, 속초, 원주, 태백, 삼척, 영월
충청권역(13)	대전, 세종, 청주, 옥천, 충주, 제천, 음성, 공주, 논산, 천안, 아산, 보령, 서산
경북권역(15)	대구, 대구강북, 대구동부, 대구서부, 대구달성, 경산, 칠곡, 포항, 울진(출장소), 경주, 구미, 김천, 영주, 문경, 안동
경남권역(15)	부산, 부산사하, 부산동부, 부산북부, 창원, 마산, 울산, 김해, 밀양, 양산, 진주, 하동, 거창, 통영, 거제
전라권역(15)	광주, 광주광산, 전주, 남원, 정읍, 익산, 김제, 군산, 부안, 목포, 해남, 순천, 여수, 광양, 제주

* 98개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울북부·서초센터는 고용센터, 울진은 출장소

□ 주요 제공 서비스

서비스 분류		참여기관	주요 서비스
고용 서비스	종합 서비스	고용센터	실직자 구직급여 및 재취업 지원, 구인·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안정 사업 등 종합 고용 서비스 제공
	지역맞춤형 서비스	시·군·구 일자리센터	지역별 구직자 취업지원 및 일자리 발굴, 채용행사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별 특화 서비스	새일센터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상담과 직업교육 훈련, 인턴십 연계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40대 이상 중장년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 및 창업, 생애설계 지원, 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의 종합 전직서비스 제공
		제대군인 지원센터	중·장기 복무(5년 이상) 제대(예정) 군인에게 진로상담, 취·창업 지원 등을 통해 사회 안착 지원
복지서비스		시·군·구 복지공무원	사회 복지 서비스 상담·신청·접수, 공공·민간 복지 자원 연계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혜택 등 상담·제공
서민금융지원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서민, 영세 상공인, 저신용·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서민층 저리자금, 신용회복 지원,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 서초, 서울북부, 울진 등 3개 기관은 고용센터 외 참여기관 없음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청년 신규 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현장 방문

◇ 대전지역 우수 정보기술(IT) 기업 (주)플랜아이 방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시행 전 현장 의견 청취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6월 25일(목) 오후 15시, 대전 유성구에 있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 기업인 (주)플랜아이를 방문했다.
- 이번 현장방문은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 지난 5월 이재갑 장관의 샌드박스네트워크 방문에 이어 연속해서 현장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정보기술(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 지원
 - **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청년을 단기채용하여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80만원 및 관리비(인건비의 10%)) 지원
- 임 차관은 사업장에서 제작하고 있는 인터넷 프로그램 개발 현장을 살펴보고, 대표이사 및 청년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신규 사업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지난 5.20일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발표한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계획」에 포함된 청년 신규 일자리 사업으로,
 -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 되는대로 즉시 사업을 개시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활력을 제공할 계획이다.

- 이날 간담회에서 임서정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인데,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위기에 대응하고 있어 청년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라 생각한다.”라면서,
- “청년 신규 일자리 사업이 어려운 청년 고용 상황을 개선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기업에서도 청년 신규 채용을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한 동력을 얻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참고 1> 고용노동부 차관 인사말씀

<참고 2>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개요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이호준 사무관(☎044-202-73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청년고용지표를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청년들이 겪고 있는 취업 시장에서의 어려움이 지표에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음

* '20.5월 청년고용동향(전년동월대비):

- ▲ 고용률 42.2%(-1.4%p) → '20.3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
- ▲ 취업자수 377만명(-18.3만명) → '20.4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
- ▲ 실업률 10.2%(0.3%p) / ▲ 실업자수 42.6만명(-1.1만명)

- 특히, 청년들은 이러한 경제위기 시 구직을 단념하고 비경제활동인구(특히 쉬었음)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특징임

- 이는 청년들이 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구직을 포기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청년들을 적기에 지원하지 않으면 장기 미취업 상태에 빠지게 되어 사회·국가적으로 큰 손실임
-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기업, 지역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 정부는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청년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5월 20일,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청년 일경험 지원” 등 새로운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월 18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 청년은 IT 능력을 발휘하여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고, 기업은 디지털 인프라 기반 구축 및 향후 언택트 업무 방식 확산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주요 내용(5만명, 4,678억원)

(대상) 미취업 청년(15~34세),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근로조건) 주 15~40시간,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등

(지원) 1인당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임금수준 비례) 및 간접노무비 10만원

-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일할 기회가 감소한 청년을 단기 채용하는 기업에 월 80만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청년은 일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기업에게는 신규 채용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주요 내용(5만명, 2,352억원)
 - (대상) 미취업 청년(15~34세, 대학생 참여 가능),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근로조건) 주 15~40시간,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전담 멘토 지정 등 (지원) 1인당 인건비 월 최대 80만원(근로시간 구간별 차등) 및 관리비 10%
-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사업 수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음
- 다만,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 만든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과,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 현장 기업과 청년들의 제안이 필요한 상황임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정부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기 바람
- 이외에도 청년 고용을 위해 정부가 마련해야 할 정책 아이디어, 정부 정책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말씀해 주시면, 돌아가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음

1.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5만명, +4,678억원)

□ (개요) 중소·중견기업에서 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미취업 청년을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인건비 지원

○ (대상) ▲만 15~34세 미취업 청년 ▲5인 이상 중견·중소기업*

* 벤처기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참여 가능

○ (근로조건) 주 15~40시간,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등

○ (지원) 1인당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임금수준에 비례) 및 간접노무비 10만원 추가 지원

* 월 보수 총액: ▲200만원 이상 → 180만원 + 10만원 지원

▲200만원 미만 → 지급임금의 90% + 10만원 지원

□ (운영체계) 청년이 IT 관련 직무 경험을 쌓고, 기업은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유도

○ (협·단체 활용, 2만명) 스타트업 디지털 역량 강화, 소프트웨어 개발 등 일부 특화 분야는 전문성 높은 협회·단체 등을 통해 사업 운영(既발굴)

▲ 신산업·에듀테크 등 스타트업 디지털 역량 강화: 창업진흥원(중기부, 1,000명)

▲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테스트 및 검수: 중소기업진흥공단(중기부, 1,000명)

▲ 공연작품 디지털 전환 지원: 예술경영지원센터(문화부, 500명)

▲ 비대면 회의기술 활용 사례 개발지원: 한국마이스협회 등(문화부, 400명)

○ (민간운영기관 활용, 3만명) 민간기업의 일자리 수요를 발굴하여 청년에게 IT 활용 가능한 직무로의 취업기회 제공

□ (채용유형) 기업에서 신청 시 채용분야를 유형별로 구분·제출하도록 하여 단순반복적인 업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사례를 사전 예방

* ①콘텐츠 기획(홈페이지·유튜브·SNS 등 온라인 분야 기획·관리·운영)

②빅데이터 활용(AI, 앱개발, 빅데이터 분석 등 신산업 분야)

③기록물 정보화(기업내 아날로그 문서 등 전산화 및 DB화 등)

④기타 IT직무(그 외 기업별 특화한 IT 활용 직무)

< 참고 : 특화분야 및 관련 기관(예시)>

특화분야	기관(부처)	인원(명)	예산 (백만원)
- 미술 작품 디지털화	- 예술경영지원센터(문체부)	750	6,750
- 공연작품 디지털 사업	- 예술경영지원센터(문체부)	500	4,500
- 마이스 전문인력 역량 강화	- 한국마이스협회(문체부)	400	3,600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현장 일자리 지원	-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문체부)	900	8,100
- 출판물 디지털화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문체부)	50	450
- 신한류 연계 중소기업 온라인경쟁력 강화	- 한국콘텐츠진흥원(문체부)	1,000	9,000
- 소프트웨어 테스트 및 검수업무 지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기부)	1,000	9,000
- 반도체 설계 전문인력 지원	- 벤처기업협회(중기부)	1,000	9,000
- 중소 서비스업 디지털 서포터즈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중기부)	1,000	9,000
- 스마트공장 제조현장 디지털화 등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기부)	1,000	9,000
- 디지털 헬스케어 신제품 마케팅 지원	- 한국바이오협회(중기부)	300	2,700
- 비대면 신산업 온라인 교육 등 스타트업 지원	- 창업진흥원(중기부)	1,000	9,000
- 소프트웨어 개발 보조, 타켓 마케팅 등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중기부)	2,000	18,000
- AI, 빅데이터, IoT 등 신산업 기술분야	- 코리아스타트업포럼(중기부)	1,000	9,000
- 4차 산업혁명 및 신산업 분야	- 벤처기업협회(중기부)	2,000	18,000
- AI 학습용 데이터 작성 인력 지원	- 지능정보산업협회(중기부)	1,000	9,000
- 소셜벤처기업 디지털 청년 일자리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중기부)	250	2,250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디지털 지원	- 한국농어촌공사(농식품부)	660	5,940
- 중소 농식품 기업 디지털 마케터 지원	- 식품산업협회(농식품부)	200	1,800
- 중소 외식기업 국내외 시장조사 지원 등	- 외식산업협회(농식품부)	100	900
- 농식품 벤처창업 청년 일자리 지원	- 농업기술실용화재단(농식품부)	207	1,863
- 스마트팜 청년 일자리 지원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농식품부)	50	450
- 제주혁신성장센터 내 창업기업 지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국토부)	85	666
- 중소환경기업 환경기술·설비 디지털화	-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부)	1,000	9,000
- 수산기업 온라인(비대면) 마케팅 지원	- 수협중앙회(해수부)	200	1,800
- 디지털 산업·직무 중견기업 일자리 창출	- 중견기업연합회(산업부)	150	1,350
- 미래차, 지능형 로봇 등 신기술 분야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부)	400	3,600
합 계		18,202	163,719

2. 청년 일경험 지원(5만명, +2,352억원)

□ (개요) 최근 신규채용 연기·중단 등으로 일할 기회가 감소한 청년을 단기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6개월간 인건비 지원

○ (대상) ▲만 15~34세 청년(대학생 참여 가능)

▲5인 이상 중견·중소기업*(직무 분야 제한 없음)

* 벤처기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참여 가능

○ (근로조건) 주 15~40시간,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등

- 청년이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업의 전담 멘토 지정, 업무지도·교육 등 내실있는 운영 지원

○ (지원) 청년의 근로시간에 따라 최대 80만원의 인건비*와 관리비 10% 추가지원

* 40~30시간: 80만원, 29~20시간: 60만원, 19~15시간: 40만원

□ (운영체계) 청년은 일경험을 쌓고, 기업은 채용여력 확보 유도

○ (협·단체 활용, 0.7만명) 관광·호텔 분야 지원, 업사이클 기업 등 일부 특화 분야는 전문성 높은 협회·단체 등을 통해 사업 운영(既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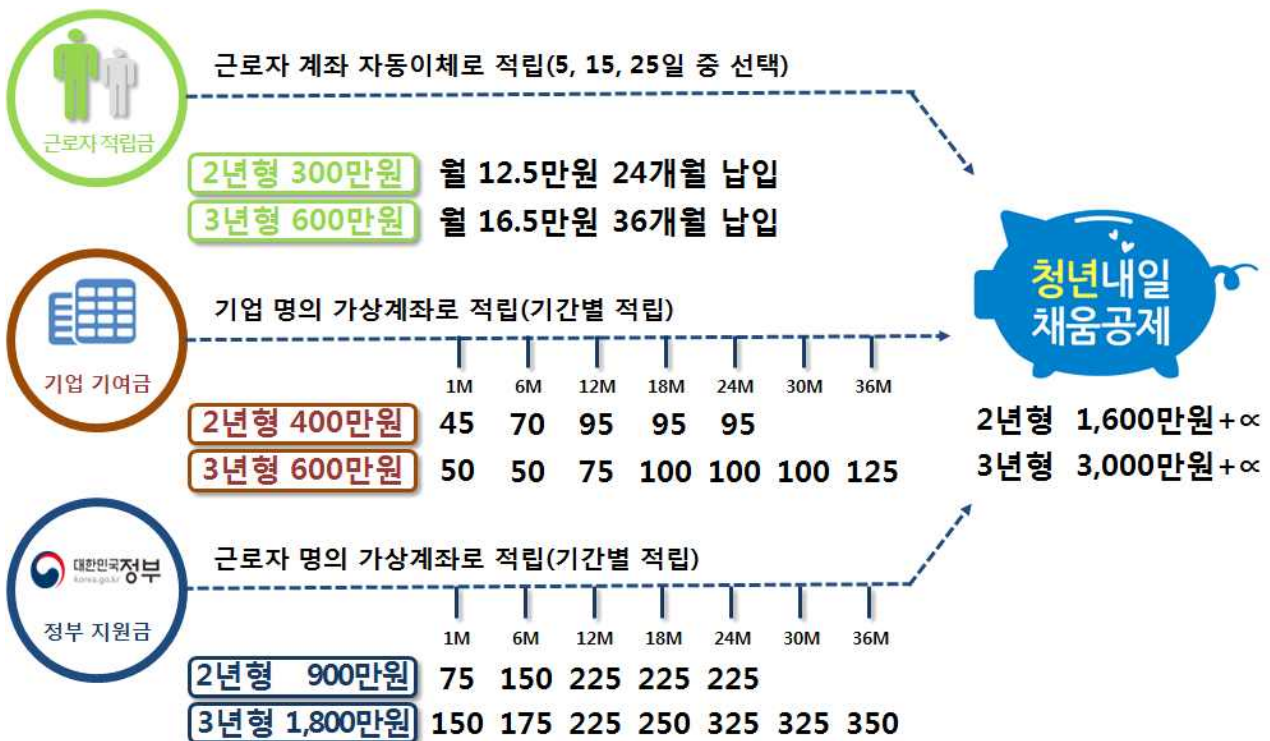
○ (민간운영기관 활용, 4.3만명) 특화 분야를 제외한 민간기업 수요는 운영기관을 통해 발굴, 청년에게 다양한 일경험 기회 제공

< 특화분야 및 관련 기관(예시) >

특화분야	기관 (관련부처)	인원(명)	예산(백만원)
- 관광-ICT 융합인력 지원	- 한국관광공사(문체부)	100	480
- 호텔 실습 분야	- 관광공사, 호텔업협회(문체부)	2,100	10,080
- 관광전공 미취업·실직 청년 지원	- 관광공사, 여행업협회(문체부)	1,000	4,800
- 출판물 발간 분야	- 출판문화산업진흥원(문체부)	50	240
- 태권도 경력 청년 일자리 지원	- 대한태권도협회 등(문체부)	850	4,080
- 중소 환경기업 분야	- 한국환경산업협회(환경부)	1,000	4,800
- 업사이클 기업 분야	- 한국환경산업협회(환경부)	100	480
- 중견기업 분야	- 중견기업연합회(산업부)	200	960
- 예비사회복지사 청년 등 지원	-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등(복지부)	100	480
- 사회적기업 일자리	- 사회적기업진흥원 등(고용부)	300	1,440
- 청년여성 인턴 지원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가부)	800	3,840
- 물류기업	- 한국통합물류협회 등(국토부)	100	480
- 소셜벤처기업 청년 인턴 지원	- 기업가정신재단(중기부)	150	720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등	- 대한화장품협회(식약처)	300	1,440
합 계		7,150	34,320

2020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 **[개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자산형성 방식 지원모델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16.7월)
 - 신규취업 청년의 일정기간 근속 및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보태어, 만기 시 일시금을 수령하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및 '채용기업'
 - (청년) 만 15~34세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
 - * 생애최초 취업자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최종학교 졸업 후 고보 가입 총 12개월 이하' 가입 가능(3개월 이하 단기가입 기간은 기간산정 시 제외)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가능)
- **[지원방식]** 가입기간 동안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 기업은 2년 450만원 또는 3년 670만원의 지원금 중 400만원 또는 600만원을 청년에게 기여

□ **[중도해지]** 본인 납입분 전액 및 지원금 일부를 해지금으로 지급

- (본인 납입분) 해지 시까지의 납입액 전액 **환급**(해지사유 무관, 2, 3년형 동일)
- (기업 기여금) 해지 시까지 적립된 기업기여금 전액 **정부 환수**(“)
- (정부 지원금) 해지 시까지 적립된 지원금의 일부를 청년에게 지급
(2년형은 50%, 3년형은 30% 수준)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운영기관 현황 [총 4개소]

운영기관명(대표전화)	운영기관명(대표전화)
(주)커리어넷 서울북부지사(02-2006-9583)	서울시북부여성발전센터(02-3399-7651)
인크루트알바콜(주)서울북부지사(02-2186-9059)	(사)한국직업지도진흥원 노원지부(02-6959-5570)

2020 기업지원제도 안내

①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종류

● 서울북부고용센터 서식자료실→ “사업주가 알아야 할 기업지원 등 주요 내용” 검색

1	고용창출장려금	①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심사형, 요건형) ② 청년추가고용장려금 ③ 국내복귀 기업 지원(심사형) ④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심사형) ⑤ 고용촉진장려금지원
2	고용안정장려금	① 정규직 전환지원(심사형), ② 워라벨일자리장려금 ③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심사형), ④ 출산·육아기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3	고용유지지원금	① 고용유지지원금, ② 무급 휴업·휴직고용유지지원금
4	장년고령자고용장려금	①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②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② 중복지원 사업 대상

양 장려금	중복 시	지원 비율
일자리 함께하기 (100% 지급)	고용창출장려금	+ 70% 추가지원
	고용안정장려금	+ 100% 추가지원

③ 문의처

○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기업지원팀 (☎ 02-2171-1800~5)

○ 기업지원 사업별 주요 내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지원내용
고용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공모형) 교대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80만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원, 1~2년 지원 -임금감소액보전: 월 최대 40만원 지원(사업주 보전임금의 80%한도)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인건비: 증가 노동자 수 1인당 월 40~100만원, 1~2년 지원 -임금감소액보전: 월 최대40만원, 1~2년 지원(사업주 보전임금의 80%한도)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 청년(만15~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이상 중소, 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미만도 가능) 사업주 [청년 추가채용 1인당] 연 최대 900만원, 3년지원
	국내 복귀 기업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중견기업 월 30만원
	신중년적합 직무고용지원	· 만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이수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고안장려금	정규직 전환지원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전환된 근로자 1인당] 임금증가 보전금: 월 최대 60만원,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할 때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도록 한 사업주 [전환된 근로자 1인당] 임금감소 보전금: 월 최대 40만원, 대체인력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월 20만원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도입·확대하여 소속 근로자가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간접노무비: 1주당 5~10만원,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시스템 구축비의 1/2 이내, 2,000만원 한도(기업당)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 육아휴직등 부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 · 대체인력지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 [해당 근로자 1인당] -대체인력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육아휴직등 부여 간접노무비: 육아휴직 월30만원(대규모기업 제외),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월30만원(대규모기업 10만원)
고유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 지원사항 별도 문의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 * 지원사항 별도 문의
장년·고령자 고용장려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율(1~23%)을 초과하여 고용 [지원수준] 기준고용률 초과 인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근로자수의 20%까지. 다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는 지원기준을 산정 시 제외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하는 사업주 [지원수준]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분기별 신청), 최대 2년간 지원